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(제2차 본회의)

2012. 10. 19.(금) 10:00~

조례안 심사보고서

=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=

총무위원회

【목 차】

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 2
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	 5
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 9
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 11
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 14

<의안번호 제2012 - 73호>

─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── ──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2년 10월 2일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2년 10월 15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2년 10월 19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군민자전거('그린씽')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에 따라 군민자 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공자전 거에 대한 주인의식고취 및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O 군민자전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정함(안 제13조제3항, 별표)

구 분	회 원	비회원	비고
기 본 사용료 (3시간 이내)	■1년권 : 20,000원 ■30일권 : 3,000원	■1일권:1,000원	○기본사용료의 사용 시간 범위에서 반복 이용은 가능하다. 이 경우 별도의 사용료 는 부과하지 않는다.

추 가 시 8 료	3시간 초 과	■시간당 500원	■시간당 1,000원	○추가 사용료의 산정 에 있어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O 이 개정 조례안은 군민자전거(그린씽)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소 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기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

○ 그 주요내용을 보면

- **안 제13조 제3항**, 별표에서 군민자전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사용 요금을 정함
 - ◇ 기본 사용료(3시간 이내)
 - ▶ 회 원 : 1년권 20,000원, 30일권 3,000원
 - ▶ 비회원 : 1일권 1,000원
 - ◇ 추가 사용료(3시간 초과)
 - ▶ 회 원 : 시간당 500원
 - ▶ 비회원 : 시간당 1,000원
 - 기본사용료의 사용시간 범위에서 반복이용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추가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60분미만은 1시간으로 봄
- **제4항**에서는 그 밖에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함
- 안 제23조 제1항 중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의 30%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음.
- O 이 개정 조례안은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주인의식고취로 자전거이용 효율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
- O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- 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2 - 74호>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2년 10월 2일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2년 10월 15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2년 10월 19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」(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)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수입을 협의회에서 독립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- O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기준을 정함(안 제2조)
 - 운영협의회 위원은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이 30%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.

-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함(안 제3조)
 - 명칭, 사업에 관한 사항, 위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 등
- O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 -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등
- O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 - 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, 부회장, 감사, 총무 각 1명씩을 둠
- O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·간사·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 함(안 제6조 ~ 제8조)
- O 협의회 재정운영 및 회계연도에 관하여 정함(안 9조)

O 이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

○ 그 주요내용을 보면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2조에서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 기준으로 협의회는 관할지역 해당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주민 으로 구성하되 여성 비율이 30%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
-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정관에 규정할 내용으로 정관에는 명칭, 사업에 관한 사항, 위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,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,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함.
-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,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,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고

- 안 제5조 에서는 협의회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, 부회장, 감사, 총무 각 1명씩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(단 감사는 연임할 수 없도록 함) 임원 및 위원이 품위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-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
-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
- 안 제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
-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,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규정하였고
-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 도록 하였음
-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「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」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수입을 협의회에서 독립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- O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- 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- 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2 - 75호>

_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_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2년 10월 2일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2년 10월 15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2년 10월 19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도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「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 행규칙」이 제정·공포(2012.6.21.)되어 도내 동일한 행정처분의 필요에 따라 현행 2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- O 금연구역 표시의 용어를 정비함(안 제6조)
 - 표지판 및 안내판 ⇒ 안내표지판
- O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함(안 제10조)
 -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
 20,000원 ⇒ 30,000원으로 조정함

-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의 표시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
 - ▶ 표지판 및 안내판 ⇒ 안내표지판
-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20,000원에서 30,000원으로 상향 조정함
- O 이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 태료 금액을 도내에 통일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 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- O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- 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2 - 76호>

_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_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2년 10월 2일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2년 10월 15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2년 10월 19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등에 따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 기간 및 병원 진료대상 범위 등을 정비하여 치매 및 노인 성질환자에게 최선의 진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

- O 노인요양병원 업무 범위를 변경함(안 제3조)
 - 치매환자 ⇒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
- O 위탁기간을 변경함(안 제4조)
 - 10년 이내 ⇒ 5년 이내
- O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상위법에 맞게 인용 법조문과 용어를 정비함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5조, 「의료법」제30조 ⇒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, 「의료법」제33조(안 제1조)
- (2) 각 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(안 제4조, 제12조)
- (3) 기타 ⇒ 그 밖의, 그 밖에(안 제3조, 제6조)

O 이 개정 조례안은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진료대상 범위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 정하는 조례로서

○ 그 주요내용을 보면

- 안 제3조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의 업무 중 "치매환자"를 "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"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
- **안 제4조**에서는 위탁기간을 조정함(단서 규정을 개정함)
 - ▶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 갱신 할 수 있다
- 이 개정 조례안은 노인요양병원의 업무 범위를 "치매환자"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"치매 및 노인성질환자"로 확대하고 위 탁기간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이 타당한 것 으로 사료되며
- O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- 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2 - 77호>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2년 10월 2일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2년 10월 15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2년 10월 19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 『영유아보육법』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과 위탁어린이집 시설장의 임기를 정 비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- O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변경함(안 제8조)
 -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가능
- O 공립어린이집 직영 및 위탁 원장의 임기를 변경함(안 제14조의2)
 - 직영 및 위탁 동일하게 → 5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적용
-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(안 제21조)
 - 영유아보육법령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」「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 준용

- O 관련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함
 - 시설장 ⇒ 어린이집의 원장
 - 종사자 ⇒ 보육교직원, 직원
 - 기타 ⇒ 그 밖의, 그 밖에
 -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
- O 어린이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(안 별표)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『영유아 보육법』 개정에 따라 위탁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 례로서

○ 그 주요내용을 보면

- **안 제2조의 별표** 에서는 어린이집의 위치를 가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
-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『영유아보육법』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 순위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 입소 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안 제8조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 위탁기간은 원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
- 안 제14조의2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안 제21조에서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,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·「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및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 을 준용한다.
-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「영유아보육법」개정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
- O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O 공립어린이집운영 위탁시 교육의질을 높이고, 안전성과 전문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중.
 - ▶ "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(또는 개인)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 하게할 수 있다"에서 <u>"또는 개인"을 삭제하고</u>,
 - ▶ <u>단서조항을 삭제</u> 하였음.

【신·구조문 대비표】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<u>또는</u>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 영하게 할 수 있다. <u>다만, 개인에게 위</u> 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	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

- 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